

동의 상대의 제안을
수용/거절하는 행위
를 넘어,
동의 계속해서
소통·협상하는 과정
하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상대의 제안을 수용/거절하는 행위 를 넘어, 동의 계속해서 소통·협상하는 과정 하기

동의 안내서

목 차

● 들어가며

●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와 동의

●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

●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

● 동의,
다양한 위치 에서 질문하기

●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

● 강간죄가
개정된다면?

세부목차

들어가며

1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와 동의 09

2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 15

- 1 성폭력 처벌 관련, 지금 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2 통계로 보는 현실 : 70%의 폭행·협박없는 강간 피해
- 3 현행 법이 놓치고 있는 것 : 폭행·협박 외의 행위 수단
- 4 사례별로 보는 법적 처벌의 어려움
 - ① 준강간: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도 처벌은 어렵다?
 - ② 위력에 의한 성폭력: 말하지 못했는데 왜 동의한 걸로 보나요?
 - ③ 성매매 상황에서의 성폭력: 돈이 오갔다면 문제없나요?
 - ④ 청소년 성폭력: '왜 계속 만났어?'라는 질문에 가려진 것
 - ⑤ 장애여성의 성폭력: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저항도 당연한가요?
 - ⑥ 이주여성: 체류 자격이 무기처럼 쓰일 때
 - ⑦ 아내 강간: 결혼했다면 '동의'된 건가요?
- 5 강간죄 개정을 위한 시도들

3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25

- 1 국제적 인식변화와 요구
 - ①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사항
- 2 해외개정 사례
- 3 '동의' 요건의 쟁점과 대안
- 4 한국의 강간죄 개정, 목적과 세 가지 원칙

4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 37

- 1 YES or NO에 담긴 제안-수락의 의미를 넘어
- 2 적극적 합의의 다섯가지 원칙
- 3 즐거움의 시작, 성적 동의
- 4 성적 동의의 시작과 끝은 '관계'

5 동의, 다양한 위치에서 질문하기 43

- 1 '동의했다'고 전제된 사람들
 - ①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도 동의일까?
 - ② 돈을 주고받았다면 동의일까?
- 2 '동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 동의는 능력일까?
- 3 동의역량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6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 49

- Q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건가요?
- Q2 범죄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건가요?
- Q3 강간죄가 개정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 Q4 법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
- Q5 성폭력 관련 법은 이미 많지 않나요?
- Q6 국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나가며. 강간죄가 개정된다면? 57

참고문헌

들어가며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간음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해서,
“양팔을 누른 행위가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폭행으로 볼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과 구조 요청을 찾아볼 수 없”어서
무죄가 됩니다

강간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거나 저항을 못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강하게 저항하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강간통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의 실제 강간 경험은 강간이 아니라고 부정당합니다. 낡은 법과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 앞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가 명시적인 폭행, 협박 없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지위와 권력 차이, 신뢰, 속임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거나, 음주 · 약물 · 수면 상태 등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합니다.

피해자들의 경험을 듣고 목격해 온 여성인권운동은 성폭력 피해 지원 활동에 기반하여 ‘반성폭력’ 언어를 만들어왔고 법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를 기준에 둔 강간죄 개정은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은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문제제기하며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로서 사람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여성인권법연대 형법개정운동은 형법 제32장의 기본범죄를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을 지원하고 연대했던 여성단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 협박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형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2019년 3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간죄 개정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의 책임을 외면하고, 동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킵니다. 강간죄 개정은 2007년 발의되었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이후 여성혐오를 정치적 자원으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성평등 기조 속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강간죄 개정은 더 많은 대중의 요구가 되었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사회적 공감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다시, 동의에 대해 말하고자 이 책자를 기획했습니다. 이 책자는 일상적 · 문화적 측면의 동의 개념부터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법적 차원에서 동의의 의미와 법 개정 방향을 살펴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와 동의」에서는 성적권리와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현행 성폭력 법체계의 한계와 폭행 · 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루며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에서는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해외 국가들의 법을 살펴봅니다.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동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어떻게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반영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합니다.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은 동의의 조건으로 평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동의는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남성의 제안-여성의 수락이 아니라 상호 간 의사 조율과 적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동의, 다양한 위치에서 질문하기」는 동의와 성폭력에 관한 문화적 · 법적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장애여성, 청소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성매매 여성 등의 위치에서 동의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동의의 조건을 확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에서는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궁금증과 오해에 답하며 강간죄 개정이 필수적 과제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죄가 개정된다면?」에서는 동의 중심의 강간죄 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동의를 구성요건에 둔 강간죄 개정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특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일입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법과 인식에서 폭력은 폭력으로 인지되며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아닌, 동의 여부를 둘러싼 맥락과 조건, 과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법의 영역을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환기시키며 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간 문화와 차별 구조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와 동의

1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연관된 권리입니다. 성과 관련된 모든 선택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적행동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적행동에 침해되지 않을 권리, 원하지 않는 성적행동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32장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지었습니다. 보호법이 ‘정조’였던 것이지요. 제297조 강간죄가 적용되는 대상(객체)도 ‘부녀’만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부녀의 정조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바꾸었고, 보호법익과 범죄 성립의 판단기준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법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었는지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는가?’를 기준삼아 따져 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있습니다. 이는 **성적 행동뿐 아니라 성 정체성, 성 건강, 재생산과 관련된 결정까지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고민하고 결정할 권리, 피임·임신·출산 여부를 선택할 권리, 성매개 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생각할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누구나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고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시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애, 출신 국가,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권리 실현에 제약이 생기거나, 차별과 혐오가 성적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막고 침해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환경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폭력으로 인식하거나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피임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과 같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도 문제입니다.

결국,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하려면 다양한 성폭력 상황뿐 아니라 성정체성, 성 건강, 재생산권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자기라는 ‘나홀로’의 뜻으로 이용되거나, 결정이라는 ‘선택’의 뜻으로만 강조되면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성적자기결정권과 유사한 ‘성적권리’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권리는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성행위의 여부, 상대방,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①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설명한 성적·재생산적 건강과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재생산에 관한 건강과 권리

성적 권리는 성적 또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 생식과 비생식에 대한 돌봄, 모성과 출산 전후의 건강, 예방과 성적으로 전염된 경우의 치료를 말한다.

- WH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는 성적 권리에는 원치 않는 성적침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교육, 돌봄과 치료, 건강이 포함됩니다. 성적 권리를 이해한다면 사회적 조건(폭력, 차별, 관계, 건강, 치료, 교육)과 개인의 상황(즐거움, 친밀한 관계, 정보, 거절과 선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2020년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성 재생산권리 보장기본법>(안) 4p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의는 무엇일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의 실현에서 '동의'는 왜 중요할까요.

WHO의 성적·재생산적 건강권에서 말하는 성적권리는 젠더기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해 일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섹스를 할 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성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적 행동은 흔히 혼자서 아닌, 상대방이 있습니다. 성적권리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적 행동은 나와 상대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를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침묵하며 얼어붙어 있는' 것을 동의로 판단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며 관계를 강요하는 상황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도 그러합니다.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관계성, 권력 등에 의한 간섭으로 이루어진 결정과 강요된 동의는 실질적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를 확인하려면 성적 교류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금은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동의란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평등하고 편안한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순간엔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라도 그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한 번의 승낙이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조율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평등한 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쪽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대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관계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이 모두 안전하고 괜찮다고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 표현이 제한되거나, 금기시되는 문화라면 동의는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는 장애인은 성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에서 본인의 의사에 보호자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더 낯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만 집중하며 성폭력으로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 동의받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를 고소당하지 않기 위한 증거로만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동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이지 않은 동의가 동의일 수 있을까요?

자발적인 동의는 존중받는 환경에서 상호 간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호교류의 과정은 어렵지만 즐거운 과정일 것입니다.

동의를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거부나 고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 교류를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는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사회구조, 문화, 복잡한 권력 작용이 얹힌 개념이자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를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거부나 고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 교류를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

2

성폭력 처벌 관련, 지금 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주요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를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거나 위협당했거나, 그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 기준은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과 차이가 큼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공포, 위축감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거절이나 반항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가해자의 행위방식이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사법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상대가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 : 70%의 폭행·협박없는 강간 피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9년 전국 66개 상담소에 접수된 1,030건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71.4%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성인 여성의 경우 68.4%, 고령자는 62.5%, 미성년자는 76.3%, 장애인 74%가 힘에 의한 강제 없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억지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는 장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전국 119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4,765건 강간 상담을 분석한 결과, 62.5%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7%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강요 19.9%, 회유 17.6%, 지위 이용 11.0%, 속임이 9.7%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여전히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폭력이 법적으로 '성폭력이 아닌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이 놓치고 있는 것 : 폭행·협박 외의 행위 수단

지금의 형법이 요구하는 '현저히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력관계와 위계에 기대는 성폭력

예를 들어 회사 상사, 선생님, 종교 지도자처럼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피해자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폭행도 협박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거절할 권리'가 박탈된 상태인 거죠.

실제 무죄 판결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8고합75 (2018.08.14) [업무상위력 등에의한간음·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수직적, 권력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 피고인에게 존재하였다...(중략) 피고인에게 정치적·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여전히 법원이 "위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협소한 기준으로 판단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폭력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등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취하기 전에 동의를 받았다"거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성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 무죄 판결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2020. 11. 27.) [준강간]

“갑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평소보다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갑의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략) 갑이 피고인과 모텔에 동행하면서 성관계에 대한 교섭이 있었거나 모텔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갑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성폭력

타인의 신체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 판결 사례 ②

어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를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정도 협박으로는 피해자가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공포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② 2021년 『정의당 젠더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59P

사례별로 보는 법적 처벌의 어려움

앞서 설명한 행위 수단과 피해자·가해자의 위치 및 관계를 기억하며 다양한 성폭력 상황별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① 준강간: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도 처벌은 어렵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단순히 피해자가 취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유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블랙아웃^❶ 상태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CCTV에서 혼자 걷는 장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에 가해자가 "나는 동의를 줄 알았다"거나 그렇게 까지 취한 줄 몰랐다고 말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기억은 못하지만 동의를 했을 가능성을 더 신뢰하여,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기억도 없고 저항도 못했는데, 가해자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❶ 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기 기억 상실 현상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해마라는 뇌 영역이 마비되면서 기억 공고화 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므로, 음주 중 귀가를 하는 등 몸이 기능을 했어도 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 하는 상태)

② 위력에 의한 성폭력: 말하지 못했는데 왜 동의한 걸로 보나요?

위력이란 사회적·경제적·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 교수, 종교 지도자 등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성인이면 쉽게 위력에 눌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실제로 "무서워서 거절 못했다"는 피해자의 말이 법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강간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말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③ 성매매 상황에서의 성폭력: 돈이 오갔다면 문제없나요?

성매매 중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특히 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성적 행위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면, 이미 전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도 경찰이나 법원은 "이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잖아"라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예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되려 무고죄나 성매매 범죄로 처벌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알리려면 '성매매 사실'은 숨기고, '성폭력'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④ 청소년 성폭력: '왜 계속 만났어?'라는 질문에 가려진 것

청소년 성폭력은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구 혹은 연인 관계일 경우, 주변에서는 "왜 계속 만났냐"며 피해자를 탓합니다. 인터넷으로 학습한 포르노 문화에 익숙해진 일부 청소년 가해자들은 동의 없는 강압적 행위조차 '장난'이나 '사랑의 표현'이라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은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간 친밀한 관계에서도 성별이나 나이 등에서 비롯된 위력이 존재할 수 있지만, 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⑤ 장애여성의 성폭력: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저항도 당연한가요?

장애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가 심해 저항이 현저히 불가능했다는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버스를 타거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장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정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여지 없이 악용되며,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현실도 있습니다. 장애정도만을 따져 성폭력 여부를 가르는 현재의 기준은 '장애'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며 성폭력 사건의 주요 본질인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합니다.

⑥ 이주여성: 체류 자격이 무기처럼 쓰일 때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특수성은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주여성에게 제한된 취업 영역이나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가해자들은 이주여성에게 "재입국 기회를 주겠다"고 속이거나 "신고하면 강제추방된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통제하곤 합니다. 이에 더해 법적 해결을 시도하려고 해도 번역 지원이나 법적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여성 피해자가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생기면 "말이 바뀌었다"며 피해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⑦ 아내 강간: 결혼했다면 '동의'된 건가요?

과거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면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2013년이 되어서야 남편이 흥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사건을 처음으로 '아내 강간'이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판례는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고수하며,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해결을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3.5%가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70.4%이며, 구체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던 경험이 70.9%,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이 57.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확한 성폭력입니다.

5

강간죄 개정을 위한 시도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백혜련, 이정미, 나경원, 박인숙,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들은 기존 형법의 '폭행·협박' 요건을 없애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류호정 의원안은 강간죄를 포함한 형법 제32장 전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편하자는 포괄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시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1년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재정비"와 "성범죄 성립조건 변경"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4,102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의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 1,346명 중 96.1%가 강간죄 판단기준의 기본요건을 동의로 두고, 폭행과 협박은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2025년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라는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면서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이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의 기준의 강간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이미 많은 시민이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의 기준의 강간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3

국제적 인식변화와 요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한 국제 법률 문서인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1993년, 유엔총회)」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측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고, 제2조 폭력의 유형에 '강간'과 '배우자 강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국가의 인권 의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1995년, 제 4차 세계여성대회)」은 여성폭력이 가정,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을 성차별로 정의 내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이하 이스탄불 협약), 2011」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여,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를 최초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침묵이 곧 동의가 아니며, 특히 강압, 무력감, 공포로 인한 침묵을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 제 4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2021「A/HRC/47/26」, 「A/HRC/47/26/Add.1」>는 강간을 인권침해이자 젠더기반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으로 강간에 대한 인식과 입법 통합과 국제기준에 맞는 법 개정 및 형사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를 검토 후,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부재라는 측면에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4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제9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심의 후, 최종견해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습니다. 일련의 국제적 흐름과 변화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1년 특별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강간죄 개정의 주요원칙 4가지와 그에 따른 입법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사항

특별보고서는 강간에 관한 법률을 신설, 개정, 검토할 때 국가는 다음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첫째, 실질적 성평등 원칙입니다. 법은 젠더관점 *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해야 하며, 실질적 성평등 달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반차별 원칙입니다. 법은 남성, 남아 및 다양한 성별로 정체화 하는 사람 *gender diverse persons*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성 고정관념 해소 원칙입니다. 법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와 형사 사법 체계에 만연한 성별에 대한 편견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 강간 신화를 비롯한 고정관념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젠더기반폭력 근절 원칙입니다. 강간은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이므로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성인지 감수성 *gender-sensitive*이 필요합니다.

4가지 원칙에 따른 입법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강간 정의의 핵심은 '동의 없음/부재'이어야 합니다.
- ② 여기서 동의란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로서, 피해자의 침묵이나 신체적 상해(저항) 없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 ③ 준강간, 유사강간 등 성적 침해를 차등 없이 포괄해야 합니다.
- ④ 배우자 강간을 명확히 범죄화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복장, 과거 관계는 증거 채택을 금지합니다.
- ⑥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는 폐지 혹은 확대합니다.
- ⑦ 국가는 수사사법절차 내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관, 법관 등 전문가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강간 범죄에 대한 변화된 국제법 기준과 원칙, 구체적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기존 법 개정 및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 다수는 이미 '동의'개념을 강간의 핵심 요건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일부 주 제외), 스페인, 일본 등은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비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free and voluntary consent*)"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독일 형법 제177조(StGB, Strafgesetzbuch)(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보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비/부동의를 기반한 성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을 통해 "No means No(*Nein heißt Nein*)"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피해자의 명확한 비/부동의를 있으면 강간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Sexual Offences Act 2003》(성범죄법)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정·정비한 핵심 입법으로, 동의(*consent*) 개념과 성범죄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법입니다. 영국은 해당 법에서 강간의 3대 구성요건을 '성기 삽입', '피해자 동의 없음', '동의를 있다는 점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스웨덴 형법 제6장(Brottsbalk, Kapitel 6)(성범죄)
2018년 개정을 통해 동의의 기준과 정의를 '자발적 참여' 여부로 규정하고,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부주의한 성범죄(*negligent*) 개념을 도입해, 행위자의 인지 책임까지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스페인 《Ley Orgánica 10/2022, de garantía

integral de la libertad sexual》(성적자유보장을 위한 포괄적 법)

일명 'Only Yes Is Yes'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최근 개정된(2022년) 성범죄 법안 중 가장 주목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단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 즉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것을 법률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이원화되어 있던 성적 학대와 성적 폭행을 통합하여 스토킹, 길거리 성희롱 등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④

일본 형법 제177조(不同意性交等罪)(부동의성교등죄)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강제성교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고 동의 의사를 형성, 완수, 표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편승하여 성교한 경우(8가지의 구체적 상태 및 조건 명시)를 부동의, 즉 '동의없음'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개정 사례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형법이 한국의 형법과 동일하게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벨기에,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을 논의하거나 이미 시행 중입니다.

④ '성적 학대'와 '성적 폭행'이 모두 '성폭행' 범주로 통합되면서 일부 범죄의 형량 하향이 소급적용된 문제가 발생함. 2023년 4월에 법을 재개정(Ley Orgánica 4/2023)하여 폭력·위협 또는 의사 무력화 시 형량을 상향하는 조항 추가함

아래는 주요 국가들이 형법에서 '성적 동의(Consent)'를 어떻게 정의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는 '성적 동의'가 법적으로 다양하게 명문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	동의 정의	강간 구성요건
영국 2003	합리적 동의 “동의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 ^{capacity} 이 있어야 한다.”	동의 없이
독일 2016	비동의 중심으로 정의하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지 않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을 경우 (언어적, 비언어적 모두 포함)	인식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스웨덴 2018	명시적, 자발적 동의 “자발적으로, 말이나 명백한 행위로 표현된 경우”	자발적으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2021/ 연방,주별 상이	적극적 동의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철회 가능한 의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포함)	동의 없이
스페인 2022, 2023	명시적 동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	동의 없이
일본 2023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는 표현을 통해 부동의 기준으로 전환	동의의사를 형성, 완수, 표명할 수 없는 상태 ⁶ 를 이용하거나 편승한 경우

6 1.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거나 받은 경우 2. 심신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3.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하게 하거나 그 영향이 있는 경우 4. 수면 기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거나 그러한 상태인 경우 5.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이행할 틈이 없는 경우 6. 예상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놀란 경우 7. 학대로 인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심리적 반응이 있는 경우 8.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상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경우

3

‘동의’ 요건의 쟁점과 대안

쟁점 1. '비/부동의 의사에 반하여/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하여'의 경우

NO

Means

NO

소극적 모델

NO Means NO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또는 저항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싫다', '하지 마라'는 식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소극적 모델의 가장 큰 한계는 피해자가 공포, 경직, 위협 등으로 인해 명시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작동하기 어렵고, 피해자 책임론이 강화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폭행 · 협박이 구성요건인 기존 법에 비해 처벌 범위를 확장할 수는 있으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간을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폭넓게 해석하지 않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거부 여부를 묻게 되는 결과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모델을 채택한 독일의 경우에도 2016년 개정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저항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공포, 충격, 경악 등으로 인해 저항 못한 경우, 사실상 비동의 간주하는 등의 보완을 했습니다.

쟁점 2. 명시적이고 자발적 동의의 경우

YES

Means

YES

적극적 모델

Yes Means Yes

“동의를 명확히 있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불법이라는 관점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및 행사를 주요 하게 보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없는 성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적극적, 자발적, 명시적(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침묵, 무반응, 경직 등은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 관점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해당 모델을 채택한 여러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 *capacity*이 있어야 한다.”, “말이나 명백한 행위로 표현된 경우”,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철회 가능한 의사 표시” 등과 같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조문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영국,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었으나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연령, 장애, 음주, 약물복용 등)일 경우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스페인은 상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동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판단하거나 과실로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 동의 모델을 채택한 미국 연방 및 다수의 주에서는 설령 동의가 있었다더라도 위계 관계(교사-학생 등)일 경우,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3. 동의하지 않음·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non

-consent

model

비/부동의 모델

non-consent model

동의없는 성적행위를 범죄로 보는 관점입니다. 적극적 모델이 동의의 존재(동의를 명확히 있었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비/부동의 모델은 동의의 부재(동의없음)를 중심에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여부로 판단하는 소극적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대표적 예시로는 독일 형법 제177조 *StGB, Strafgesetzbuch*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와 일본 형법 제177조 *不同意性交等罪* 부동의성교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의 정의가 조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되면 피해자의 행동과 말이 비/부동의(거절)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상대가 알 수 있었는지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침묵, 위축, 마비, 공포 등으로 인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비/부동의) 가해자가 ‘동의를 줄 알았다’라고 판단될 수나 오인을 주장하면 수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2016년 재개정을 통해 인식 가능한 의사 *erkennbarer Wille*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인식가능한 의사란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하며, 명시적 거부(“하지 마세요”, “싫어요”)뿐 아니라 밀침, 버팀, 뒤로 물러섬, 울음, 떨림, 얼어붙음, 반복적인 침묵까지 포함합니다. 일본은 2023년 개정에서 동의모델로 전환하되, **부동의를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이용하여”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한국의 강간죄 개정, 목적과 세 가지 원칙

한국사회는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성관계는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에게 피해자 말하기의 용기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간죄는 아래의 세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① 동의 기준으로의 변경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의 부재를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없음, ‘동의’로 오해되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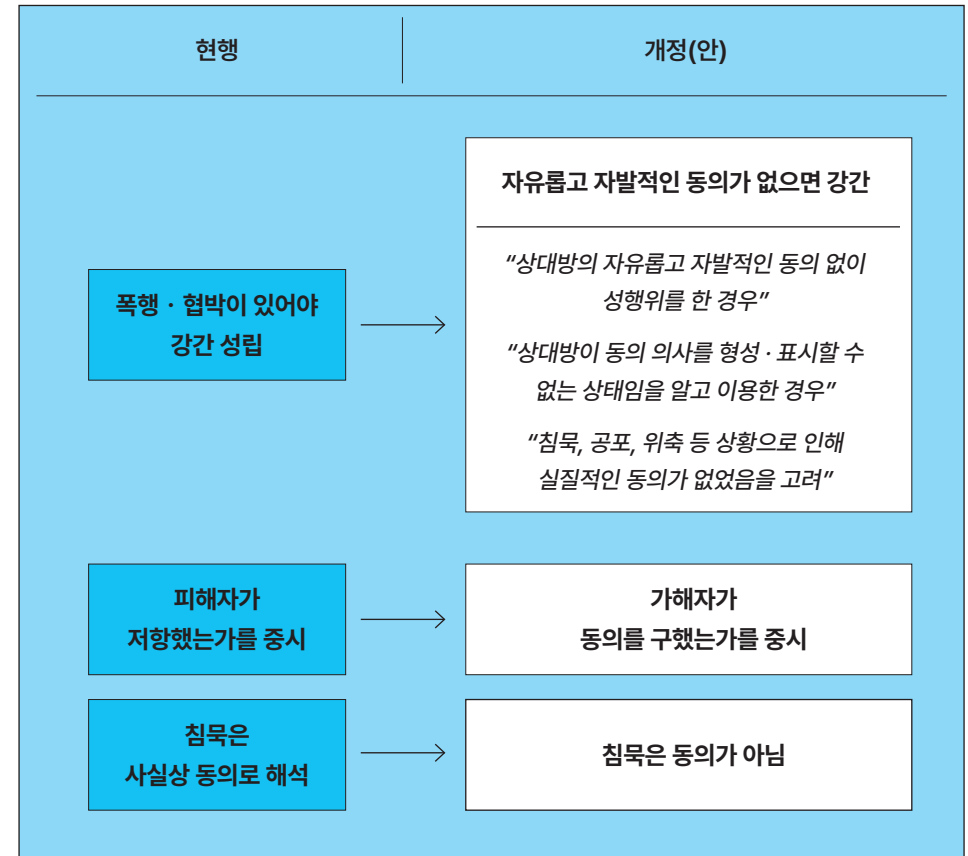
② 입증 과정의 성편향 배제

기존의 수사·재판 관행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의 증거력을 배제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성적 이력을 근거삼아 공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권이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심문을 통해 피고인의 신빙성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성인지 교육과 사회 인식 개선

법조인,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교육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와 직장 등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동의 개념을 보편화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나” 대신, “상대의 동의는 분명히 있었는가?” 개정은 단순히 법문 수정, 법률 용어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가, 그리고 피해자 중심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강간죄 개정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나” 대신, “상대의 동의는 분명히 있었는가?”

개정은 단순히 법문 수정, 법률 용어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가, 그리고

피해자 중심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강간죄 개정입니다.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

4

동의를 단순히 의사나 행위에 대한 승인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그리고 행위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성적 동의는 YES or NO와 같은 이분법적·형식적 의미를 넘어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윤리적·법적 개념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동의의 조건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동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YES or NO에 담긴 제안-수락의 의미를 넘어

흔히 성적 동의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확인 절차를 의미하곤 합니다. 우리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성적 관계맺음이 이렇게 간단하고 이분법적인 제안-수락의 형식으로 설명되어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성적 동의의 문법은 '남성은 성욕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성향'이고 '여성'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응하는 성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어 '각본'이 됩니다. 이 각본 속에서 성적 동의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 직전에 이루어지거나 사실상 생략되고 마는 것이지요. 또한 이성애중심적인 로맨스 각본을 따르고 있어 현실의 여러 관계 및 실천과 어긋나있고 행위자의 취약한 조건이나 행위자 간의 권력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의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내지 않고 성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제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성적동의를 현실적 한계도 함께 강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성적 동의 개념을 예/아니오라는 좁고 일방적인 선택지가 아닌 '상호-합의'로 제안합니다. **적극적 합의(Affirmative Consent)**는 남성 제안-여성 수락이라는 YES or NO 이분법적 각본을 거부하고, 의사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자발적이고 상호평등한 관계를 '동의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2 적극적 합의의 다섯가지 원칙*

아래는 실제 친밀한 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서 어떻게 성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 최소한의 기준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성적 동의를 둘러싼 쟁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① 명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상대의 상태를 살피고, 잘 모르겠을 때에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일상, 특히 스킨십과 성관계에는 문화적 관습이 스며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느낌이나 생각만으로 짐작한다면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행이나 통념에 따라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상황❶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집, 모텔, 술집, 클럽 등 어떤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20대 남성 47.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20대 여성 17.7%). '늦은 밤 남성을 집에 오게 한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남성 27.4%가 동의했습니다(20대 여성 9.3%). 무엇보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의로 해석하는 사회에서 여성/소수자의 의사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❶ 이는 '묵시적 동의'라는 쟁점과 연결됩니다.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특정 행동이나 상황에서 관행이나 맥락을 통해 동의가 암시된다고 해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의식이 있을 때

누군가 잠들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의식이 불명확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때 동의의 표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동의일 수 없습니다.

* 이 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새로운 반성폭력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했습니다.

③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적 동의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때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기능에 적합한 형태여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동의한 것인지,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전달된 것인지 동의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인지, 다른 선택도 가능한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④ 평등하게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평등할 수 없고 따라서 동의는 특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제대로 성찰되지 않고, 권력자가 동의를 자신의 의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는 강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력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면 표면적 동의가 있을지라도 동의한 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회유나 강압 없이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흔쾌하고 적극적인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⑤ 모든 과정에서 항상

평소 성적 행위를 함께하는 연인 또는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선불리 합의과정을 건너뛰어서는 안됩니다. 상대가 어제는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가 키스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섹스도 동의할 것이라고 넘겨짚어서도 안됩니다. 특정 수준의 성적 친밀감에 동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스킨십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제안을 할 때 언제나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로 합의하고 성적 행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도중에 그만하길 원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즐거움의 시작, 성적 동의

동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동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성적 열정을 방해하거나 즉흥성과 자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적 동의는 '그래', '싫어'와 같은 단순한 수락 또는 거절의 말도, 결국은 성기 삽입으로 가는 길목에 단계마다 놓여있는 '허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 관계에서 서로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바라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호탐구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반복적인 성적 대화가 가능해질 수록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계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불가능했을 행동을 기꺼이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적 동의에 기반한 안전함과 성적 즐거움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함에 대한 믿음은 성적 즐거움을 만든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피임과 즐거움을 협상하는 대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성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 동의는 형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적 ·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내고, 서로의 욕망에 대해 충분히 듣고 질문하는 '의사소통'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서로의 자율성을 키우는 관계 속에서 안전은 물론 즐거움도 커지지 않을까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은 관계 내에서 ‘동의’를 시도하고, 원하는 조건과 관계를 구성해나가며 경험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적 동의에 대한 관계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는 나만의 의지 혹은 대화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또한 성적 동의는 계약서처럼 한 번 정해두면 끝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관계의 조건을 끊임없이 상호 인지하고 합의하는 관계역량이 필요한 일입니다. 동의를 둘러싼 갈등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내 힘의 불균형에 대한 일상적인 성찰도 가능해야 합니다.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이를 정당화해온 사회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는 필수적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 모든 사람은 동의 역량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법적 변화와 함께 자리잡아야 합니다.**

동의, 다양한 위치에서 질문하기

5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동의 여부로 성폭력 판단 기준이 변화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과 언어의 전환을 수반합니다.

동시에 동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주체들에게 동의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중요한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관계, 정체성에 따라

동의를 전제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나 '동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의 자리만이 허락된 채 동의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자원으로부터 누락되어 있는 이들은 누구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모두에게 동의와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동의했다'고 전제된 사람들

친밀한 관계 및 부부 사이(있)거나 성매매 여성인 경우 이미 지속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동의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이 쉽게 생략되고 동의 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성소수자 등 비규범적 성적 실천을 하는 경우 '과잉성애화'로 인해 쉽게 문란한 관계, 폭력적인 관계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차별적 시선으로 인하여 쉽게 호기심의 대상이 될 뿐, 폭력이 발생할 때 진지한 사회적 개입이 차단되고, 어떤 방식의 동의가 있었는지 질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의했다'고 전제된 사람들에게 흔히 던져지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①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도 동의일까?

많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들에게 성적 경험은 때로는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락'했던 성적 경험은 형식적인 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스스로도 해석이 난감한 경험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 내 동의가 고민되었던 경험에 대해 여성들은 당시 상황이나 관계 자체의 위계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성적 행위, 몸과 감정을 살필 틈 없이 해야 하니까 했던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또 관계 빈곤 속에서 친밀함을 기대했지만 섹스만 요구되었던 성적 상황 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험들이 폭력으로 해석되진 않더라도 친밀한 관계 내 최초의 동의는 성행위 전반의 포괄적 동의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관계 맺음이 아니라 '남성들의 섹스할 권리'만이 요구되는 친밀한 관계의 경향도 문제적입니다.

교제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관계 특성상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해자들은 상대가 무엇에 취약한지 그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협박, 동정심, 또는 애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락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성적 동의'를 고민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이 아니라,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여성성 규범, 성적 경험과 지식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폭력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친밀한 관계의 맥락과 물리적 폭력의 행사보다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어떻게든 형식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가해자의 전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돈을 주고 받았다면 동의일까?

돈을 받았으면 '원해서 한 것'이라는 자발성의 논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인식은 성매매에 사회적·법적으로 개입할 때 매번 부딪히게 되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계약'이라는 외형은 성매매 여성이 '동의'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문제없는 계약관계라는 인식은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가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라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산업에 유입되고, 성매매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로 빈곤한 여성들이 고수익이라는 홍보를 통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처벌받아 마땅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통해 자원으로부터 배제되고 고립됩니다. 성매매 산업은 바로 이러한 성매매 여성의 빈곤과 체계화된 낙인을 통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가해자들은 성매매 여성의 취약한 위치를 알고, '돈을 준 사람'으로서 권력에 우위,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위치를 이용합니다. 화폐를 주고받은 사실을 동의의 표시로 이해하기 보다 성매매 산업의 '자유로운 계약관계'라는 형식 아래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 동의는 능력일까?

장애인과 청소년의 경우 법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동의 여부가 아닌 항거불능 요건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⑦ 청소년의 경우에도 의제강간죄를 통해 연령 기준의 미성년자와 비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했을 때, 비청소년을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합니다. 보호의 이름이지만 청소년과 장애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애인과 청소년의 동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장애 여성의 항거불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왜 청소년의 동의 역량이 현실에서 제한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장애 여성은 일상에서 차별, 경제적 착취, 가정폭력, 학대, 주거불안정 등의 복합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서 삶의 ‘주도권’이 박탈되어 있는 조건은 성적인 관계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청소년은 가족 내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가정밖’ ‘학교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질까요? 가정 내 폭력 등으로 탈가정한 청소년의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동의서 없이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권한이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청소년의 위치 때문에 어떤 여성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성을 거래 수단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일탈’로 치부되어 ‘일반적’ 청소년의 일상과 분리됩니다.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보다 가중처벌하고,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능력’이라는 등식이 불평등한 사회를 고려하지 못할 때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성적 권리의 증진과 보장은 요원해집니다.

성적 권리가 개인의 능력이라는 관점은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장애와 연령 만으로 입증될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의 결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역량이 더 논의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적 권리로서 동의는 무엇이 동의를 가로막는지, 동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질문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 역량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구성원들의 동의 역량 증진을 위해 여러 조건들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동의 역량은 시민권 및 안정적인 노동권과 주거권,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접근권 등 여러 연결된 권리의 맥락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국가와 사법부는 ‘동의의 조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동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역량 보장 사회의 토대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동의 = (개인화된) 자기결정 능력이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은 동의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서 동의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동의를 해석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적 권리가 개인의 능력이라는 관점은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장애와 연령 만으로 입증될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의 결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 사회적 역량이 더 논의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

Q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곧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수사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나이차 및 체격차, 피해 전후의 행동 이력, 통화내역, 주변 상황, 의학적 자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성행위의 존재, 피해자의 무저항 등), 피의자-피고인 진술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송치, 기소되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고, 심지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언급하며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설득력 있게 피해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에 피해자는 놓여 있습니다. 유죄선고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선고한 후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면 유죄선고 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때 편견에 의해 진술을 배척하면 안 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 2018년 판례 이후 2019년 사법연감과 2024년 사법연감을 비교하면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무죄율은 높아졌습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Q2

범죄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를 증명하는 것은 범죄자를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동의여부'로 구성요건이 바뀌어도 동의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에 반하여' 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해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기준을 '동의'로 하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공소를 제기하는 자가 증거와 함께 주장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Q3

강간죄가 개정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에서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많을 거라고 강조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피해자에 대한 불신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를 거쳐 방지법으로 만들어진 1990년대에도 "쳐다만 봐도 성희롱이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불법촬영 법안이 확대개정된 2020년대에도 "우연히 방에서 나와 거실에 켜진 영상을 봐도 입건되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과장어법을 사용하여, 법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폭력 무고는 얼마나 될까요?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성폭력 범죄 처분 인원 수는 80,677명인데, 그 사건 중 성폭력 무고로 유죄 선고가 된 경우는 341명이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0.4%입니다. 날조되는 사건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걸러지고, 기소도 되지 않으며, 법을 통해 제재되고 있습니다.

Q4

법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동의는 내심의 영역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해'나 '승낙'의 개념이 있습니다. 형법학에서 양해나 승낙은 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③ 그러한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고 행위자(피고인)가 양해 또는 승낙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④ 피해자는 언제나 자유로이 종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등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간죄를 동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동의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을 만들고 이용하는 범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의할 수 없었던 상황을 법이 살피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부동의성교죄로 형법을 2023년 개정하면서 이렇게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 표명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혹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라고요. 이어 동의를 부재한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심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수면 그 밖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의사를 형성 표명 유지할 틈이 없는 것, 공포심을 갖거나 경악한 경우, 학대에 기인한 심리적 반응, 지위에 기초한 영향력, 8가지입니다.

Q5

성폭력 관련 법은 이미 많지 않나요?

강간죄 개정은 '비동의강간죄'를 새로 신설·도입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형법에 규정되어 온 폭행·협박과 피해자 저항 정도라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성폭력 기준을 동의할 수 없었던 상태로 정렬해 명확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종교인과 신자, 의사와 환자,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 성폭력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죄(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위력(형법 303조)은 '업무, 고용' 관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남자친구가 행한 성폭력이나, 고립된 여행지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가이드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의 본질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 본질인데, 성폭력의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 협박의 최협의설이라는 낡은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실무상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 협박의 최협의설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의 기준 강간죄 개정은 수많은 성폭력 관련 법률에 또다른 법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성폭력의 본질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사람에 따른 판단의 편차를 줄이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Q6

국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성인 여성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니 이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국가가 형법을 통해 막는 건 과하지 않아?”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관계는 사회 곳곳에, 누군가에게 분명히 작동하면서 존재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 안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련된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떠올려봅시다. 직장내 괴롭힘 조항이 생겼다고,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요.

처벌은 권리 폄하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이 비상인데요, 청소년의 온라인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권리를 착취하는 행위, 손쉽게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정의하는 것은, 처벌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기삽입을 했는데 목을 강하게 누르면 강간죄를 인정하고, 손목을 잡으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지,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충분히 형법을 통해 규율해야 할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체 수단을 논의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제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아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정의하는 것은, 처벌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의 본질인 ‘성적자기 결정권’에 부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기삽입을 했는데 목을 강하게 누르면 강간죄를 인정하고, 손목을 잡으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가며.

강간죄가 개정된다면?

1

모든 성적행동에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준이 됩니다. 이를 인식하고 교육합니다.

'동의 없이 상대를 성적으로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이 학교, 도로, 화장실, 열차, 온라인 곳곳에 포스터로 만들어져 게시됩니다

수많은 법조문을 따로 배워야 했던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상대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평등하게 소통하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습하는 교육으로 바뀝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성적 강요, 성적희롱, 집단적 성경험 과시하기, 개인 성적 사생활 캐묻기, 대담 강요하기 등에 대해 나의 의사를 확인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해 집니다

2

모든 사람을 자기 의사를 가진 동등하고 평등한 성적 존재로 존중합니다

성적인 자기표현이나 성적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 집니다.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안전한 수단과 방법이 공개적으로 확대됩니다.

성매개 질환을 감추지 않고 상담받고 진료받게 됩니다

성적 친밀성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이자 삶의 중요한 희로애락으로 경험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3

성적 의사소통과 일상적 신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린이든, 장애가 있든, 부하든 상사든, 이주민이든, 성적 호감이 있든 없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대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세심하게 하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넘겨짚지 않고 확인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모든 사회공간에서 존중받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된다면 자유로운 의사증진과 사회적 신뢰, 협력도가 높아집니다

4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기준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셨는지, 약물이 사용됐거나 검출됐는지, 심신이 상실될 정도였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장애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했는지, 피해 당시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업무상 관계였는지, 협박과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세세히 입증해야 하기 보다 -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중심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피해자와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로 나누어 '피해자는 없어' '거짓말쟁이야' '성폭력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 '그 사람은 진짜 피해자가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음해하는 문화를 벗어나게 됩니다

김보화(2019), “스피크 아웃,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외침”, 이나영(역),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돌베개.

김신아(2022), “적합소: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소개합니다”, 『나눔터』, 제90호, 46-51쪽.

김신아(2024), “‘동의’를 질문하며 위협 너머 나아가는 여성들”, 『나눔터』, 제93호, 12-16쪽.

김신아 · 김동은 · 김신현경 · 나무 · 호연(2023), 『동의를 질문하며 위협너머 나아가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주현(2024), “비동의간음죄의 ‘동의’개념에 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3호, 73-112쪽.

김효정 · 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권 1호, 69-105쪽.

나무(2023), “장애여성, ‘위험’한 몸으로 욕구를 드러내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동의를 질문하며, 위협 너머 나아가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나영(2020),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16세 미만의 ‘동의’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다토코로 유(2025),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주최 토론회 자료집(2025.4.15.)

달개비 · 도미 · 로이 · 밍기뉴 · 시원 · 은사자(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동의 · 위력 · 강간문화 · 성인지감수성』,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박아름(2021), “성폭력 상담지원 현장에서 마주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여성폭력 긴급간담회 성적자기 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정의당 제20대 대선 ‘나라 바꾸는 여성’ 선대본 · 류호정의원실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21.12.17.).

법원행정처(2019), 『사법연감』

법원행정처(2024), 『사법연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2020), 「성 · 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토시위에서 폐지를 넘어 국회까지 권리를!」

유나(2020), “동의/비동의, 자발/비자발 담론을 넘어”, 『16세 미만의 ‘동의’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진아(2024), “동의를 복합적인 원칙과 정의로운 실천에 대한 공감의 가이드라인 소개”, 『돌봄과 섹슈얼리티: 교차적으로 고민하고, 정의로운 실천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주최 포럼 자료집(2024.12.13.).

윤덕경 · 이미정 · 유경희 · 강지명 · 한민경(2021),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경환(2023), “비동의 강간죄’ 반대주장에 대한 검토”,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주최 토론회 자료집(2023.07.25.).

이미경(2019),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여성학논집』, 제36권 2호, 67-91쪽.

장다혜(2024), “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5권 4호, 121-168쪽.

장다혜(2025), “비동의강간죄 해외입법례 검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내부 발표회 자료(미간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19), 『전국 성폭력 상담사례 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

진은선(2022), “성적 권리를 지지하는 돌봄관계는 가능한가”,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주최 라운드테이블 자료집(2022.12.28.)

최예훈(2020), “성매개감염의 위험과 쾌락을 협상하기”, 『이슈페이퍼』, <https://srhr.kr/issuepapers/?bmode=view&idx=6142927>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김신아 · 박아름 · 한소망(2022), 『<새로운 반성폭력 ·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한국성폭력상담소.

UN 인권이사회(2021),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2021「A/HRC/47/26,「A/HRC/47/26/Add.1」>, 한국어 번역 강간죄 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민일보 2020.3.8. “불리하면 성폭행?” 남자들 걱정하는 강간죄 개정[팩트체크]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0014327356

법률신문 2018.08.28. [판례해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https://www.lawtimes.co.kr/opinion/146014?serial=146014&utm_source=chatgpt.com

서울신문 2022.08.13. 모델=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wlog_tag3=naver

여성신문 2023.06.23. 술,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https://www.ildaro.com/9658>

연합뉴스 2023.02.06. [팩트체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26800502>

프레시안 2023.02.21.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해설] 지금 당장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015111567179>

한겨레 2021.02.06.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

한겨레 2023.01.30.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7429.html>

한겨레 2025.04.21.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 일 · 영 · 독 · 캐나다에선 도입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3469.html>

한경 2020.06.02.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6022899Y>

준강간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 항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335&utm_source=chatgpt.com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20.05.01. 일탈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n번방 방지법’ 이후의 과제를 제안하며
<https://wetee.kr/24/?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3782850&t=board&category=5ls3hwu02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health-topics/sexual-and-reproductive-health-and-rights#tab=tab_1

2018년 들불처럼 번진 **#Metoo**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명확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용기 있게 성폭력을 이야기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책임전가, 2차 피해는 더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침은 많아졌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 실현하는 사회적 조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가부장적 시각, 남성중심적인 법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강간죄의 판단기준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소개

이런 강간죄 판단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한) ‘진짜 피해자’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은) ‘가짜 피해자’로 이분화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왔습니다.

#Metoo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에는 성폭력 관련된 법 개정안이 150여 개나 상정되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도 10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바로 세워야 하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더이상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 개념,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홍보 영상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제작 · 배포 기자회견 09.18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라! 집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11.13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공동주최	공동논평 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공동논평 03.30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국회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연대발언) 캠페인 04.02 - 04.14 총선 대응 <call21st> 프로젝트 https://call21st.works/,	기획기사연재 01.09 - 03.08 <강간죄를 묻는다>, 한겨레 캠페인 03.08 온라인 참여 플랫폼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오픈 및 개정 서명운동 wonderful-law.korea.wtf 토크콘서트 08.24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간담회 12.17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정의당		토크쇼 06.09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자료발간 10.05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2021)> 번역 캠페인 12.10 온라인 낭독회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공동논평 01.27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리포트연재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총 9회 설문조사 05.22 - 06.26 '원치 않는' 설문조사 (총 참여자 1,346명) 국회토론회 07.25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캠페인 04.02 - 04.09 총선 대응 call22nd 프로젝트 https://call22nd.works/ 국제활동 05.14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 제88차 세션 한국정부 9차 심의 의견 개진 간담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및 간사 등	

집행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12개 단체)

전체단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돌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인권,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13개 회원단체 및 2개 부설 기관), 세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벨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들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

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군성·가정폭력상담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여성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여수새날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템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

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사)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젠더폭력피해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지회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다감복지협회 부설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

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129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및 29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10개 본·지부),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25개 본부·지부) (총222개 단체)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발간
소셜펀치 후원자

coolkid	시화	전순희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신아름	전한빛
강은진	신지영	정선영
공명	신희누리	정유진
곽신영	심미정	정지혜
권김현영	안김정애	정혜선
권하영	안정희	정효선
권혁주	오매	조서윤숙
기형욱	오승윤	조성아
길양배	우하	조아라
김규원	유서연	조은
김동은	유준현	조진희
김순남	유지현	조하
김우정	윤은미	조혜인
김유희	윤이	최김하나
김인숙	윤주영	최동현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이가영	최란
김정희원	이경환	최민정
김지은	이나비	최숙경
김지혜	이도희	최승은
김혜원	이명옥	최원진
나영정	이미경	최지인
남성아	이상진	한선희
박선희	이소희	한송이
박아름	이아진	한유림
박지선	이연수	한이계영
박지아	이예원	허승연
배수지	이정선	허유진
백미나	이훈	허정익
서주환	이희수	홍보미
서진하	잇다_깁다	황유진
성문화연구소 라라 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황지영
송란희	장유은	황혜정
스텔라	장윤희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 동의 상대의 제안을 수용/거절하는 행위를 넘어,
동의 계속해서 소통·협상하는 과정하기

발간일

2025년 8월 12일

발간처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집필·편집

눈사람, 조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은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세은 탁틴내일

동은,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감수

이경환

디자인

다정

